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5월 25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구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성장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료지원의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의료지원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 및 기능 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환수조치 (안 제10조)

### 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의약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(무학동), 문의전화: 02-3396-6401, FAX: 02-3396-8910, 메일: ksh3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「구강보건법」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.
2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 아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
  - 나.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
4. “의료지원”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 및 아동의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
2.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
3.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4조(지원 대상)** 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,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.

1. 구에 설치된 학교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
2.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및 아동

**제5조(의료지원의 범위 등)** 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

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②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.

1. 구강검진, 예방, 치료 등 구강관리서비스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의료지원비)**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(이하 “의료지원비”라 한다)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료기관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의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진료내용
3.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등

**제7조(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 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(이하 “지역협의체”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1.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
2.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
3.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
5.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.

**제8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**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
2. 의료지원 대상 선정, 절차,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

**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**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고,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환수조치)**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,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